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
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외국과의 학술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학술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하여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의 임기가 평생 동안으로 개정(2011)된 바, 명예회원의 임기도 평생으로 변경하여 명예회원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4년마다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으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 1) 명예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명예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임기 변경 (안 제4조 개정)

- 2)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임기를 4년, 연임에서 평생 동안으로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명예회원의 결격사유) 명예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4조 중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평생 동안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명예회원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명예회원의 임기는 <u>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u>제3조의2(명예회원의 결격사유)</u> <u>명예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u>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 ----- <u>평생 동안으로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술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6872